



제418회국회(정기회)
제7차기획재정위원회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정태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4788호)

2024.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이정은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국세의 부과·징수·송무 등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국세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근거 마련(정태호의원안)	3

I. 개요

1. 정태호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4788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정태호의원 등 13인
- (2) 제 안 일 : 2024. 10. 18.
- (3) 회 부 일 : 2024. 10. 21.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조세탈루 등 조세 관련 범법행위를 신고한 자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를 명시하고 있으나, 조세채납 추적 및 소송 수행 등 직무와 관련하여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 근거가 부재한 실정임.

그런데 최근 악의적 채납자의 재산은닉 수법이 교묘해지고 지능화되어 채납자의 은닉 재산을 추적하기 위한 공무원들의 잠복 및 수색 업무 강도가 높아지고, 기획성 조세회피행위가 만연함에 따라 범리다툼이 치열한 소송사건 대응에 공무원들의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되고 있으므로 현장 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를 독려하기 위한 포상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세청장이 국세의 부과·징수·송무 등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

려는 것임(안 제84조의2제1항 개정 및 제84조의2제1항제8호 신설).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국세의 부과·징수·송무 등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국세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근거 마련(정태호의원안)

현 행	개 정 안
☐ 포상금의 지급(제84조의2) ○ 지급대상 - 탈루세액 또는 부당 환급·공제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 신용카드 결제 거부 또는 사실과 다른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을 신고한 자 - 현금영수증의 발급 거부 또는 사실과 다른 발급을 신고한 자 -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신고한 자 등 - <신 설> ○ 지급 제외 - 해당 위법행위의 과태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 ○ 지급 한도 - 조세탈루제보자: 40억원 - 체납자의 은닉재산신고자: 30억원 - 기타 포상금 지급대상자: 20억원	☐ 공로 우수 국세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근거 신설 - 국세의 부과·징수·송무 등에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국세의 부과·징수·송무 등에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의 경우는 예외)

* 정태호의원안 2024. 10. 18. 발의(의안번호 4788)

□ 개정안은 국세의 부과·징수 직무와 관련하여 특별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현행법은 국세청장으로 하여금 조세탈루제보자에게는 40억원, 체납자의 은닉재산신고자에게는 30억원, 기타 포상금 지급대상에게는 20억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¹⁾.

포상금 지급현황을 살펴보면, 20억 혹은 30억원 초과 고액의 탈세, 은닉 건이 지속적으로 제보되고 있음.

[탈세제보포상금 지급현황]

(단위: 건, 백만원)

구분	5천만원 이상 5억원 이하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2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	
	지급액	건수	지급액	건수	지급액	건수	지급액	건수
2019	9,196	372	3,788	34	500	2	1,480	2
2020	10,924	416	3,289	26	594	2	1,315	4
2021	9,049	357	4,033	32	509	2	449	1
2022	9,125	333	4,055	33	594	2	1,178	4
2023	10,453	383	4,410	42	1,545	6	1,145	4
2024.09	6,733	257	3,902	26	642	2	2,049	5

자료: 국세청

1) 「국세기본법」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억원(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40억원으로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억원으로 한다)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2.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은닉재산포상금 지급현황]

(단위: 건, 백만원)

구분	5천만원 이상 5억원 이하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2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	
	지급액	건수	지급액	건수	지급액	건수	지급액	건수
2019	573	27	229	2	-	-	-	-
2020	725	28	121	2	360	1	-	-
2021	751	22	672	5	-	-	-	-
2022	900	32	192	2	385	1	-	-
2023	916	32	638	5	-	-	318	1
2024.09	398	10	-	-	381	1	-	-

자료: 국세청

□ 개정안은 국세의 부과·징수·송무 등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점에서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임.

첫째, 최근 악의적 체납자의 재산은닉 수법이 지능화되어 은닉한 재산을 추적하기 위해서는 잠복, 수색업무 등 세무공무원의 강도 높은 업무가 요구되고 있고, 현장 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 독려를 통해 국세 부과·징수업무의 효율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것임.

최근 5년간 미수납액 및 불납결손액 규모를 살펴보면, 미수납액은 2019년 41조 3,910억원에서 매년 증가하여 2021년 50조 4,965억원, 2023년에는 63조 9,714억원으로 최근 5년간 가장 큰 규모로서,

특히, 미수납액 사유 중 체납자 재력이 부족하거나, 거소 불명으로 징수하지 못한 경우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납세 회피를 위한 재산은닉이 하나의 요인으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관

리가 필요한 상황임. 2023 회계년도 결산 시 미수납 국세에 대한 징수율 제고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²⁾된 바 있음.

[최근 5년간 미수납액 및 불납결손액 현황]

(단위: 억원)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미수납액	413,910	441,835	504,965	558,488	639,714
불납결손액	37,568	38,624	43,694	18,290	22,835

자료: 기획재정부

[2023년도 각 세목별 미수납액·결손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계	징수유예	납기미도래	정리유예	채납자재력 및 거소불명	기타사유
63,971,384	1,668,925	5,842,325	2,768,681	52,344,514	1,346,938

자료: 기획재정부

둘째, 국가의 강제력에 기반하여 세금을 징수하는 업무의 특성을 고려할 때 국세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수행을 유인할 제도적 방안이 필요한 점이 있음.

급부행정 또는 지원업무 등을 수행하는 다른 정책기관과는 달리, 반대급부 없이 국가의 강제력에 기반하여 금전을 징수하는 세무행정의 특성상 적극적인 업무수행은 자칫 민원 유발, 이의제기, 감사 청구, 소송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상당 수 발생하고 있고 이는 공무원의 소극적 업무수행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개정안은 이를 감수하고 열심히 일한 일선 세무공무원의 자긍심을

2) 2023회계년도 결산 기획재정부위원회 전문위원실 검토보고 참조

고취하기 위한 제도로써, 포상금 액수의 다과(多寡)와는 별개로 상징성 있는 정책으로서의 의미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 최근 3년간 조세심판 청구 및 조세행정소송 제기 현황]

(단위: 건)

구분	2021	2022	2023
조세심판	7,019	8,291	10,887
행정소송	1,430	1,608	1,688

셋째, 현재 국세청에서는 국세청 훈령인 ‘소송사무처리규정’에 근거하여 승소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에 대한 법률상 근거가 미비한 문제를 보완할 수 있음.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보상금 및 포상금에 대한 지급근거는 법령에 명확히 규정하도록 하고 있음.

참고로, 세금 징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다른 기관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관세청에서는 현행 「관세법」 제324조제1항에 범죄물품을 압수한 사람 등 공로가 있는 사람에 대해 포상하는 경우에 공무원을 포함하고 있고³⁾, 대다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세기본법」⁴⁾ 및 관련 조

3) 「관세법」

제324조(포상) ①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1. 제269조부터 제271조까지, 제274조, 제275조의2 및 제275조의3에 해당되는 관세법을 세관이나 그 밖의 수사기관에 통보하거나 체포한 자로서 공로가 있는 사람
2. 제269조부터 제274조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범죄물품을 압수한 사람으로서 공로가 있는 사람
3.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세관장이 관세 및 내국세 등을 추가 징수하는 데에 공로가 있는 사람
4. 관세행정의 개선이나 발전에 특별히 공로가 있는 사람

「관세법 시행령」

제277조(포상방법) ①법 제324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포상장 또는 포상금을 수여하거나 포상장과 포상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②관세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포상금의 수여기준을 정하는 경우 포상금의 수여대상자가 공무원인

례에 따라 징수포상금 제도를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됨.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등에서 징수액의 1%~5% 수준으로 건당 30만원~50만원을 한도로 징수포상금제도를 운영 중임.

□ 다만,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공무원의 직무상 행위에 대한 포상의 경우 민간인의 조세탈루 제보 등 자발적 협력행위에 대한 포상과는 차이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은 그 상한액 등을 합리적인 수준에서 민간인과 달리 설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둘째, 개정안은 ‘국세의 부과·징수·송무 등에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어 마치 구체적인 포상자의 결정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하는 취지로 오해될 수 있고, 국세의 부과·징수·송무 외 모든 국세 행정이 포상금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으므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

때에는 공무원에게 수여하는 포상금총액을 그 공로에 의한 실제 국고수입액의 100분의 25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1인당 수여액을 100만원 이하로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지방세기본법」

제146조(포상금의 지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금은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지방세를 탈루한 자의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2.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3.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稅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
4.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 부과·징수에 또는 지방세 조합장이 지방세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에 따라 국세의 부과·징수·송무에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자’로 조문의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았음.

셋째, 제도 도입의 취지에 맞는 공정한 포상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국세청은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포상 기준을 하위법령에 명확히 마련할 필요가 있음.

[수정의견]

개 정 안	수정의견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생략) 1. ~ 7. (현행과 같음) 8. 국세의 부과·징수·송무 등에 <u>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u>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u>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생략) 1. ~ 7. (현행과 같음) 8.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u>국세의 부과·징수·송무에 특별</u> <u>한 공로가 인정되는 자</u>

문 의 처
02)6788-5161